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55
----------	-------

발의연월일 : 2023. 12. 5.

발 의 자 : 이상헌 · 김승남 · 신정훈
장철민 · 김수홍 · 양경숙
유정주 · 김영배 · 박완주
전혜숙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를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기기·장치를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이용환경 속에서 비공식 서버·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물 내용을 변형 이용(Mod)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게임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중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기기·장치를 제작·유통하

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행위”를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9. ----- ----- ----- -----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① ----- ----- ----- -----.
1. · 1의2. (생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제1호 · 제4호 · 제7호 · 제9호 또는 제10호에	2.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u>자</u> <단 서 신설> 3. (생 략) ②·③ (생 략) 제45조(벌칙) (생 략) <신 설>	-----<u>자</u>. 다만, 제3 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 다.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